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규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485

발의연월일: 2021. 9. 8.

발 의 자 : 안규백 · 김영배 · 김정호

류호정 • 문정복 • 민홍철

윤재갑 • 이상민 • 정일영

홍영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아파트 단지와 대학교 캠퍼스 등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'도로'의 용도로 이용하는 곳임에도 불구하 고 도로교통법상 '도로'가 아닌,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되고 있음. 이 로 인하여 아파트 단지와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「도로교통법」 및 「교통사고처리 특례법」의 보호 대상에 서 벗어나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개정 「교통안전법」의 시행(2020.11.27.)으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경우에는 교통안전시설 설치·관리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다수의 학생 및 교직원이 통행하는 학교 내 도 로는 여전히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음.

그러나 학교 내 도로에서도 교통사고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,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등 이륜차 사용 증가 및 배달 오토바이의 교내 진입

증가 등으로 인해 오히려 학교 내 교통사고 우려는 더욱 증가하고 있음.

이에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내의 도로를 「교통안전법」상 '단지내도로'에 포함함으로써 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(안 제2조제10호 개정).

법률 제 호

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0호 중 "공동주택단지"를 "공동주택단지, 「고등교육법」 제2 조에 따른 학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| 제2조(정의) |
|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| |
| 1. ~ 9. (생 략) | 1. ~ 9. (현행과 같음) |
| 10. "단지내도로"란 「공동주택 | 10 |
| 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| |
| 따른 <u>공동주택단지</u> 등에 설 | <u>공</u> 동주택단지, 「고 |
| 치되는 통행로로서 「도로교 | 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 |
| 통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| <u> </u> |
|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며, 그 | |
|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| |
| 정한다. | |